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년월일 : 2023.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민선8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존속기한 연장, 목표액 200억)과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격안정기금 운용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농산물 최저가격 정의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제5조)

나. 기금 목표액 수정 및 대상품목 지정(안 제6조~제15조)

다. 기금운용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변경(안 제12조)

라.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규정 마련(신설 안 제15조)

마. 최저가격 차액지원 세부기준 마련(신설 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2항(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2024년 예산에 기금 5억원 반영 요구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0. 17. ~ 2023. 11.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그**”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설립된 조합**”을 “**설립된 조합**”으로 한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주 출하기 도매시장가격 중 최고연도와 최저연도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제19조1항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 가격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출연금(연간 10억을 목표로 한다)**”을 “**출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까지 100억원**”을 “**2029년까지 200억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농산물유통담당 주사**”를 “**유통정책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평창군 회계관**

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명”을 “19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지원과장”을 “축산농기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산물유통담당 주사가”를 “유통정책팀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한 차례만 연임”을 “연임”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 제1항 전단 중 “군 농”을 “관내 농”으로, “경작하거나 사육된 것으로”를 “경작한 전략품목 및 육성품목 중 10개 품목과 관내에서 사육된 한·육우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차액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품목이 5일 이상 연속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시 지원한다.
- ④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평창군 농축산물 농산물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업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가격안정기금 운영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가격안정기금 운영 담당부서의 팀장, NH농협 평창군농정지원단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 담당 임직원 7명

2. 관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5명

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3명

⑥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차액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차액지원 등

제19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최저가격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현지 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을 “제2조1항의 최저가격은 지원대상 품목별 주출하시기 도매시장가격”으로 한다.

제20조(중전의 제19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군 소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의 산지유통 계통출하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략)

제5조(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재원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

3 \_\_\_\_\_.

-----  
----- 설립  
----- 조합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원 및 관리 등) ①  
-----

성한다.

1. 국가, 강원도 또는 군의 출연금(연간 10억을 목표로 한다)

2. ~ 5.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4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관리한다.

③ (생략)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생략)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담당 주사

② 제1항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

1. ----- 출연금

2. ~ 5. (현행과 같음)

②

-----  
-----  
----- 2029년까지 200억원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 유통정책팀장

②

-----  
-----  
-- 「평창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구성) ① 군수는 법 제 13조에 따라 설치하는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영 제7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유통과장, 기술지원과 장로 한다.

가. ~ 마. (생략)

3.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 주사가 된다.

제 1 2 조 ( 구 성 )

--.

-.

1. ----- 19명

2 .

----- 추  
산농기계과장----

가. ~ 마. (현행과 같음)

3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  
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  
며 당연직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  
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③ (생략)

<신설>

유통정책팀장이 -----.

제13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연임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실무협의회  
의 구성 및 운영)

① 평창군 농축산물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업  
무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  
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의 위원장은 가  
격안정기금 운영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  
원중에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가격안정기금 운영 담당부서의 팀장, NH농협 평창군농정지원 단장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임직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관내 농업협동조합 경제사업 담당 임직원 7명

2. 관내 농업인단체 관계자 5명

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시민단체 대표 3명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삭 제>

제5장 차액지원 등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범위) ①

----- 관내 농----- 경작한 전략품목 및 육성품목 중 10개 품목과

제5장 차액지원 등

<신 설>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범위)

① 차액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군 농가 등에서 경작하거나 사육된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농협계약재배 외의 계약재배 및 위탁사육 물량은 제외한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16조·제17조 (생 략)

제18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최저가격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현지 조사를 통한 생산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참고하여 해마다 상반기에 개최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생 략)

제19조(지원금의 환수) ① 군수는 농업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의 차액지원을 받은 때에는 해당 지원금을

관내에서 사육된 한·육우에 대하여 -----.

② (현행과 같음)

③ 차액 지원기준은 지원대상 품목이 5일 이상 연속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시 지원한다.

④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하품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7조·제18조 (현행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음)

제19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① 제2조1항의 최저가격은 지원대상 품목별 주출하시기 도매 시장 가격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지원금의 환수) ① ----- 제16조

환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0조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2항(기금의 존속기한)③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이유가 있을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동 조례 제6조에 의거 기금 존속기한 연장 및 조성액 증액에 따른 추가 비용발생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가격안정기금 조성 목표액의 증액(100억 → 200억) 및 존속기한 연장

### 나. 추계 결과

- '23년 가격안정기금 조성액 7,884백만원으로 향후 12,000백만원의 추가조성 필요

### 다. 재원조달 방안

- 군 일반회계 및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연락처	(033) 330 - 1371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6차년도 (2029년)	계
<b>세 입</b>	57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12,070,000
전입금	5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1,000,000
전출금	7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70,000
<b>세 출</b>							
<b>재원 조달</b>	57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12,070,000
의 존 재 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 세						
자 체 수 입	소 계	5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1,000,000
	지방세						
	세외수입						
	전입금	5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2,100,000	11,0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출연금)	7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70,000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